## ●환경부령 제1047호

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 2023년 07월 24일

환경부장관 📵

#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하수 유출량"을 "유출지하수 발생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하수가 유출되는"을 "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지하수의 유출 위치"를 "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하수가 유출되는"을 "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자"를 "자 또는 제1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·관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중 "[선택] 불용공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관정에 표시"를 "※ 불용공(不用孔)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관정에 표시하고 되메움깊이를 기재합니다."로 하고, 같은 쪽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유출지하수 발생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"지하수의 유

구분	표시 및 기재사항								
유형	[ ] 유형1 [ ] 유형	g2 [ ] 유형3 [ ]	유형4 [ ] 유형5 [	] 유형6 [ ] 유형7					
되메움깊이	투수성재료	m	불투수성재료	m					
	※ 법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								
출 위치"를 "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"로 한다.									
유출지하수	유출지하수 발생량		유출지하수 발생 위치						
발생현황		m³/일							
유출지하수	1		유출지하수 발생 위치						

별지 제16호서식 중 유출지하수 발생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출지하수	유출지하수 발생량		유출지하수 발생 위치	
발생현황		m³/일		

별지 제17호서식 이용계획 내용란 중 "지하수의 유출 위치"를 "유출지하수 발생 위치"로, "지하수 유출량"을 "유출지하수 발생량"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"유출 위치"를 "유출지하수 발생 위치"로, "지하수 유출량"을 "유출지하수 발생량"으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제1호 중 "유출량"을 각각 "발생량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"유출/이용

량"을 각각 "발생/이용량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·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한 후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부터 적용한다.
  -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별표 제1호나목·라목·바목·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.

#### [별표 2의2]

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 · 관리 기준(제15조제15항 관련)

#### 1. 시설기준

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 다.

- 가. 영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에 맞게 다음 1)·2)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·구조, 유출지하수 발생량,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  - 1) 공통 시설
    - 가) 집수시설: 유출지하수를 모으는 시설
    - 나) 탁수처리시설: 침전시설 등 유출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
    - 다) 저류시설: 유출지하수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
    - 라) 송수시설: 펌프·관로 등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운 반하는 시설
  - 2) 용도별 시설
    - 가) 소방용・청소용・조경용: 물 분사시설
    - 나) 공원용: 물 분사시설 및 지하수 함양시설(도시 물 순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, 투수 블록·포장재, 인공실개천 등을 말한다)

- 다) 공사용: 급수시설
- 라) 냉난방용: 히트펌프
- 마)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: 해당 용도 에 적합한 시설
- 나. 도로 먼지 저감용 살수장치(클린로드) 또는 폭염 저감용 물안개 분무장치 (쿨링포그) 등 유출지하수 이용과정에서 사람이 섭취·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여과시설, 소독시설 등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- 다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청소 등 관리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.
- 라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 내 다른 용도의 배관과 색을 다르게 하는 등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마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펌프(집수시설에 모인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거류시설로 보내기 위한 펌프를 말한다)는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.
- 바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정확한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(제어장치를 포함한다)를 부착해야 한다.
- 사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, 안내문의 크기는 500mm(가로)×400mm(세로)로 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. 다만 안내문의 부착 위치 및 크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안내문							
용도 및 종류					집수시설 용량		m³
저류시설 용량			m	$l^3$	이용계획량		m³/일
준공일자	년	월	일		관리자 (연락처)		
이 시설은 입니다.	「지하수	법」	제9조의	20	에 따라 설치형	한 유출지하수	이용시설

## 2. 관리기준

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- 가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, 보수, 위생 및 안 전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나. 오수 등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 리해야 한다.
- 다. 이용되는 유출지하수가 용도에 적합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질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라. 가목에 따른 청소 및 점검 등의 결과와 매월의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기록하고, 기록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,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·보관할 수 있다.
- 마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도면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보관해야 한다.
- 바.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운영이 중지되거나,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### 비고

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·관리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·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.